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444
----------	------

제출년월일 : 2012. 11.

제출자 : 홍진옥, 최용수, 천윤옥 의원

1. 제안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장 책무(안 제3조)
- 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안 제5조)
-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라.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지원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자문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2012. 10. 15 ~ 11. 4) : 의견없음
- 조례안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

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의 책무)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6. 장애인가족 권리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소요예산 내용과 결산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② 위탁이 해지되면 충주시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을 모두 충주시에 귀속된다.

제4장 자문기구 활용

제11조(자문기구 활용)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발의자명부

-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찬 성 자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김 현식	김현식	
최 는 배	최은배	
안 희숙	안희숙	
허 여숙	허여숙	
강 재진	강재진	
송 쑥호	송수호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